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신탁계정을 활용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(법률 제20895호, 2025. 4. 1. 개정, 시행 2025. 10. 2.)됨에 따라,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신탁계정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방식 규정(안 제19조의10 신설)

- 1) 유동화수익증권이 일부 매각되지 않아 유동화보증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매입함으로써 유동화보증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
- 2)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 등에 따르도록 함
- 3) 최종 계산서를 신용보증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시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금전채무)”를 “(금전채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.

③ 법 제2조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
2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

제19조의7의 제목 “(유동화회사보증)”을 “(유동화보증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0(회사채등 유동화신탁) 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

여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. 다만,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동화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등의 총액(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)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수(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)로 나눈 가액(價額)으로 한다.

③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7항에 따른 최종 계산서를 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(회사채등 유동화신탁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함)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시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신용보증등의 한도)”를 “(보증등의 한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유동화회사보증”을 “유동화보증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4호 중 “유동화회사보증”을 “유동화보증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호 중 “유동화회사보증”을 “유동화보증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9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”를 “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·제5호 및 제9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23조제1항제4호·제5호 및 제7호”

를 “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·제4호·제5호 및 제9호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1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9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유동화회사 보증”을 “유동화보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3. 법 제23조의6에 따른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사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금전채무) (생 략)	제3조(금전채무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 한다.
<u><신 설></u>	③ 법 제2조제10호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산권”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.
	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 른 기업어음증권
	2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 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
제19조의7(유동화회사보증)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	제19조의7(유동화보증) <삭 제>

하나의 것을 말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
른 기업어음증권

2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
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
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
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자산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의10(회사채등 유동화신탁)

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
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
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
용 등을 위하여 회사채등 유동
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
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
다.

② 기금이 제1항에 따라 유동화
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
취득가격은 「자본시장과 금융
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
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.
다만,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
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동

	<u>화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등의 총액(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)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수(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)로 나눈 가액(價額)으로 한다.</u> <u>③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7항에 따른 최종 계산서를 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(회사채등 유동화신탁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함)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.</u>
제20조(신용보증등의 한도)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, 재보증 및 <u>유동화회사보증</u> 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.	제20조(보증등의 한도) ① ----- ----- ----- <u>유동화보증</u>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) 법 제2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	제21조(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) ----- -----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를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
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
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
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
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
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

제23조(종속채무의 범위) 법 제29
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종속채무”란 다음 각 호의
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
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
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
것의 합계액을 말한다.

1.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
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
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
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주
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
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
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
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
이자액

2.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
----- 유
동화보증-----

제23조(종속채무의 범위)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유
동화보증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금융회사등: 법 제23조제1항 제2호·제5호 및 제7호의 업무

2.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: 법 제23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

3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: 법 제23조제1항 제4호·제5호 및 제7호의 업무

② (생략)

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기금(제24조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법

제24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1. -----
----- 제9호-----
--

2. -----

----- 법 제23조제1항 제2호의3·제5호 및 제9호-----

3. -----

----- 법 제23조제1항 제2호의3·제4호·제5호 및 제9호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

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<u>제7호</u>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무 2. (생략) 3. 법 제23조의3에 따른 <u>유동화 회사 보증</u> 등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3의3.</u> (생략) 4. ~ 8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<u>제9호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유동화 보증</u> ----- ----- 3의2. (현행과 같음) <u>3의3. 법 제23조의6에 따른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사무</u> <u>3의4.</u> (현행 제3호의3과 같음) 4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862